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고용보험 교육자료

- 화물자동차, 가전제품설치원 -

보험적용국 적용계획부

화물자동차 산재·고용보험 특례

화물차주 및 화물자동차의 정의

➢ **화물차주**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를** 말함

➢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함

※ 차량번호는 '부산(지역) 00(차종) 오(용도) 0000'으로 구성되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차는 지역이 표시되어 있고

차종은 80~99, 용도가 '바.사.아.자·배'로 한정됨

(차량번호판 색깔은 노란색)

화물자동차 산재·고용보험 특례

화물차주 적용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① 특수자동차로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② 특수자동차로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③ 피견인자동차 또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④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위험물질(인화성 물질,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방사성폐기물, 지정폐기물, 농약과 원제)을 운송하는 사람

화물자동차 산재·고용보험 특례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법령	ㅇ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3호	ㅇ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1호
적용대상 일반	① 근로자가 아니고 ② 전속성이 있으며 ③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 중 ④「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1.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하는 사람(내용물은 불문) 2.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3.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1차 철강재만 대상_철근, 봉강, 형강, 선재, 중후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강관, 주조 등) 4.「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6가지 위험물질_인화성 물질,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방사성폐기물, 지정폐기물, 농약과 원제)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②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의 사업을 위하여 ③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④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1.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하는 사람(내용물은 불문) 2.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3.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1차 철강재만 대상_철근, 봉강, 형강, 선재, 중후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강관, 주조 등) 4.「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6가지 위험물질_인화성 물질,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방사성폐기물, 지정폐기물, 농약과 원제)

▪화물자동차 산재·고용보험 특례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명의노무제공자와 실노무제공자가 다른 경우	o 실노무제공자(운전원) 입직신고 대상	o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원칙에 따라 실질 노무제공자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취득(명의상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이 경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계약서* 등을 통해 실질 노무제공자가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공단은 신고내용에 따라 취득 처리하는 등 피보험자격 인정 * 노무제공계약서 작성(실노무제공자 별도 명시 등), 실노무제공 사실 인지 등
단기노무제공	o 일시적 노무제공자는 특고 비해당 - 노무제공 일시성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여 건별 노무를 제공하거나 노무제공 일수가 1~2일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의미하나 실제 대상 여부는 사안별 판단 필요 사례) 화물정보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동일 화주의 화물이 빈번하게 배정되더라도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특고 비대상	o 1개월 미만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고용보험 비대상 - 플랫폼 이용 및 일회성은 고용보험 비대상 단, 다른 일반화물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차주와 1년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한(용차계약) 후 이 계약에 따른 운송횟수가 년간 96회 이상 되는 경우 일반 노무제공계약자로 취득신고

화물자동차 산재·고용보험 특례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차량번호판	ㅇ 차종: 80~99 ㅇ 용도: 영업용(아, 배, 사, 자, 바)_노란색 번호판	
보험가입자 일반	ㅇ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주선사업자 ㅇ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화주가 직접 화물차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는 해당 화주	
2이상 사업장과 화물운송계약	ㅇ 나중에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 ㅇ 주된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경우 화물차주가 과반소득을 얻는 사업장(주된 사업장)의 사업주	ㅇ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각각의 사업장이 보험가입자
보험료 산정	ㅇ 주된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액 적용 - 월 중간에 입·이직된 경우 기준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적용	ㅇ 동일 직종 내 둘 이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하여 피보험기간 중복되는 경우 → 월보수액/피보험신고 사업장수 (보험료 균분)
신고방식	ㅇ 보험가입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입·이직 신고 (피보험자규정 별지 제4호 서식)	ㅇ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화물차주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4서식)

화물자동차 산재·고용보험 특례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화물자동차 2대 이상 보유	ㅇ 화물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하고 한 대라도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차주는 특고 비해당 예) 화물자동차 3대를 보유하고 1대는 화물차주가 A사업장과 장기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운송, 나머지 2대는 타인을 사용하여 B, C 사업장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모두 특고 비대상	
타인사용	ㅇ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 특고 비해당	ㅇ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 특고 비해당 * 타인을 일부 사용하는 경우 향후 별도 시달 예정
이중취득	ㅇ 주된 사업장 적용(나중 화물운송계약 사업장) - 2021.7.1. 화물자동차 특고 산재보험 적용 당시부터 2개 이상의 사업장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노무제공을 하였다면 과반소득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인정	ㅇ 각 각의 사업장 취득 ㅇ **2개 이상의 사업장과 계약 → '기준보수'를 사업장수로 균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부과함
타인명의 화물자동차 운전	ㅇ 실제 운전자를 특고로 인정 -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도 인정	ㅇ 실제 운전자를 특고로 인정 - 원칙: 명의상 사업주와 실 사업주가 동일해야함 - 보충: 노무제공 받는 사업주가 실제 노무제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정
1개월 이상 계약	ㅇ 상용형태로 입직신고 대상	ㅇ 상용형태로 취득신고 대상
기준보수	ㅇ 적용(월 4,310,000원)_월 중 취득·상실자 보수산정: 기준보수×해당월 근무일수/월력상 일수	
보수총액신고	ㅇ 비해당	
업무관할	ㅇ 특고센터	

가전제품설치원 산재·고용보험 특례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법령	ㅇ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2호(가전제품설치원)	ㅇ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8호(가전제품설치원)
적용대상 일반	① 근로자가 아니고 ② 전속성이 있으며 ③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다른 가전제품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가정 또는 회사 등 설치 장소에 따라 특고 적용대상을 판단하지 않음으로 회사에서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특고 해당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②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의 사업을 위하여 ③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④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가정 또는 회사 등 설치 장소에 따라 특고 적용대상을 판단하지 않음으로 회사에서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특고 해당
비대상	ㅇ 가전제품 설치원만 특고 적용대상이며 수리원은 특고 비해당 ㅇ 주기사가 보조기사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는 특고 비해당 ㅇ 가정용 보일러 설치원, 사무기기 설치원은 가전제품이 아니므로 특고 비해당	ㅇ 좌동

가전제품설치원 산재·고용보험 특례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법령	ㅇ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2호(가전제품설치원)	ㅇ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8호(가전제품설치원)
적용대상 일반	① 근로자가 아니고 ② 전속성이 있으며 ③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다른 가전제품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가정 또는 회사 등 설치 장소에 따라 특고 적용대상을 판단하지 않음으로 회사에서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특고 해당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② 자신이 아닌 다른 사업의 사업을 위하여 ③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④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가정 또는 회사 등 설치 장소에 따라 특고 적용대상을 판단하지 않음으로 회사에서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특고 해당

가전제품설치원 산재·고용보험 특례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험가입자	ㅇ 가전제품 설치원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 ※ 수차의 도급관계(판매업자→물류회사→설치 전문업체→가전제품 설치원)하에서 가전제품설치원의 보험가입자는 가전제품 설치원과 직접 계약을 맺은 설치 전문업체임	ㅇ 좌동
비대상	ㅇ 가전제품 설치원만 특고 적용대상이며 수리원은 특고 비해당 ㅇ 주기사가 보조기사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는 특고 비해당 ㅇ 가정용 보일러 설치원, 사무기기 설치원은 가전제품이 아니므로 특고 비해당 ㅇ 에어컨 설치 기사는 업무 특성상 2인1조로 운영되므로 특고 비해당	ㅇ 좌동

▪ 가전제품설치원 산재·고용보험 특례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신고방식	o 보험가입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입·이직 신고	o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월보수통보	o 기준보수 적용되므로 별도의 월보수 통보 비해당	o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월보수통보 - 산정방법: 총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비과세소득-필요경비(공제율) ※ 경비율: 가전제품설치원(26.8%)
타인사용	o 타인을 사용하는 경우 특고 비해당	o 좌동
이중취득	o 주된 사업장 적용(나중 노무제공계약 사업장)으로 이중입직 불가 - 다만 종사 시간,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이중입직가능 (직종이 다른 경우_보험금융업, 방문판매업과는 이중입직 불가)	o 각 각의 사업장 취득

가전제품설치원 산재·고용보험 특례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제외	ㅇ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특고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 ㅇ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해 특고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 - 사업장 경영악화, 사업장 이전, 매출감소로 인한 휴업, 동절기 휴장 등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특고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휴업 ※ 적용제외신청서 제출 다음 날부터 보험료 부과 면제 ⇒ 적용제외기간 중 노무제공 확인되는 경우 또는 재해발생 시 적용제외 사유가 자동 소멸한 것으로 보아 보험료 부과 ※ 위 사유로 1개월 미만 휴업하는 경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휴업 등 신고서 제출	ㅇ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 별도 제출 필요
보수총액신고	ㅇ 대상	
업무관할	ㅇ 특고센터	

감사합니다